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97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최민희·김우영·김기표

임오경 · 이훈기 · 권칠승

장종태 · 황정아 · 한민수

조인철 · 김 현 · 박민규

김동아 · 문금주 · 이광희

박선원 • 김남희 • 이정문

박성준 · 서영교 · 유건영

박해철 • 조계원 • 이해민

박희승 • 문대림 • 이해식

의원(27인)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인터넷 도박이 성인은 물론 청소년 사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은 성인 인증 절차도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때문에 쉽게 도박에 빠져들고, 이로 인해 친구 사이에 사채를 쓰거나사기가 벌어지고, 범죄조직에 가입하는 등 더 큰 피해와 불법행위로까지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형법」이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과 같은 법으로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을 통한 사행행

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방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해서는 인터넷 도박 운영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같이 도박 자금 입금 및 출금에 사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운영자의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해당 계좌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도박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며,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불법온라인사행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정부의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책임 등을 정하고,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불법온라인사행산 업 이용계좌" 등의 정의를 둠(안 제2조).
- 다.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불법수익 등을 얻는 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

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불법수익이 송금·이체된 다른 금융회사에게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함(제4조).
- 마.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조).
- 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 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고, 해당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 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9조).
- 사.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 도록 함(안 제10조).
- 아.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함(안 제12조).
- 자. 누구든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에 불법온라인사행 산업 이용계좌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차.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를 신고한 도박이용자가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도박이용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불법온라인사행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책임 등을 정하고, 불 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 온라인사행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불법온라인사행행위"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참여하여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이 결정되 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입는 행위를 말한다.
- 2.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3호다목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운영자"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4.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란 도박이용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불법사행산업 운영자가 이용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 5.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6. "전자금융거래"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 7. "불법수익"이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으로 얻은 재산, 그 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나 불법온라인사행산업과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말한다.
- 8.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9. "도박이용자"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참여하여 사행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불법수익을 얻는 의심거래계좌 (이하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 야 한다.
 -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정지의 신청 등) ①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 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불법수익을 송금·이체한 행위와 관련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불법수익을 특정하여 해당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불법수익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 및 불법수익의 통지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불법온

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 3. 제3조에 따른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결과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한다.
-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명의인 (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 2. 불법수익을 송금 ·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 3. 금융감독원
- 4.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절차·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누구든지 제5조에 따라 지급정지 가 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 4. 질권(質權)의 설정
-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1. 해당 계좌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 2.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전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전받은 자금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인출되어 계좌에 남은 잔액이 불법온라인사행산업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 제5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 나. 제5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 다. 제5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 라. 제5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 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또는 전자 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수사기관 또는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① 금융감독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이를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 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이 해제된 때에는 전 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수사기관,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수 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은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요청·제공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 제12조(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상담
 - 2.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관한 제보의 접수ㆍ처리

- 3.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및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의 정보제공
- 4.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 공의 중지 요청
- 5.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 용계좌 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로의 정보 전파
- 6. 그 밖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대응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경찰청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법인·단체 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한 신고) ① 누구든지 불법 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1. 불법온라인사행행위가 이루어진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온라인사행 산업 이용계좌가 게시된 자료
 - 2.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운영자가 입금을 요구한 문자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가 적시된 자료

- 3. 그밖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존재를 확인할 경우 지체 없이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한다.
- ④ 신고의 방법·처리절차·증빙자료의 접수와 확인 및 그 밖에 불법은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포상금) ① 금융위원회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를 수사 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 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 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15조(도박이용자에 대한 형의 감면)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한 도박이용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도박이용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16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운영자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광고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협조관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7조(벌칙) 거짓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 지 아니한 금융회사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